

2025년 부산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국내전시회 참가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와 부산시가 지원하는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수행자로 지정된 부산테크노파크에서 국내전시회 참가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5년 07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부산광역시장, 부산테크노파크원장

1 지원개요

- (지원목적)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 및 마케팅 역량 강화
- (지원규모) 약 0.3억원 / 총 8개사 내외
- (신청자격) '25년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수혜기업¹⁾ 및 인증유효기업²⁾
 - 1) 초광역권선도기업, 지역혁신선도기업, 예비선도(스타)기업, 잠재기업 지원 선정기업
 - 2) 2025년 인증 유효한 초광역권선도기업, 지역혁신선도기업, 예비선도(스타)기업
- (지원내용) 수출 관련 국내전시회 참가지원

(단위: 천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원금
2025년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수혜기업 및 인증유효기업	▶ 대한민국 산업단지 수출박람회 참가지원 - 9.10.~12. / 고양 킨텍스(KINTEX) - 항공료 및 체제비는 민간부담	8개사 내외	협약일 ~10월	최대 4,000 (기업부담금 10% 이상 현금)

※ 지원규모 및 지원금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방법) 지원기업 선정 후 간접지원의 방법으로 지원

2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선정평가(서면평가) → 결과통보
- (평가기준) 지원기업 선정평가 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지원 필요성 (40)	○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20
	○ 지원대상 제품/서비스 사양, 현 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및 지원의 필요성 등	20
지원내용 타당성 (35)	○ 지원내용, 범위, 수행일정의 구체성	25
	○ 지원금액의 적정성	10
기대효과 (25)	○ 지원대상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가능성	15
	○ 고용 및 매출 증대 가능성	10

③ 유의사항

- (중복지원 불가)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주제)로 기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중복지원을 한 경우 선정평가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또는 선정 이후라도 지원기업 협약해약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등 정부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음

- ① 중소기업부에서 수행 중인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기 지원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25년 지역주력산업육성 지원대상 여부

① 초광역권 선도기업 > ② 지역혁신 선도기업 > ③ 지역특화 프로젝트 >

④ 지역스타기업, 초기·잠재기업 순으로 우선하여 기업지원

(예) A기업이 지역특화 프로젝트 30백만원 선정되면 지역성장사다리 지원 20백만원 추가 지원 불가

- ② 지자체 등 정부·유관기관과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주제)로 기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신청자격 요건) 「지역중소기업법」 상의 지역중소기업
- 프로그램별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프로그램 중복수혜 불가
- 과제종료 후, 선정기업은 사업성과 활용을 위한 제반자료 요청시 적극 협조해야 함
- 기업부담금 및 부가세는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며, 총 사업비는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임
- 신청서 접수 후 과제별 면담/현장실태조사 또는 별도 서면자료 등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지원제외 대상)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구분	신청제외 대상
1	필수 제출 서류 누락 또는 제출된 서류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경우, 선정취소 및 협약해지 될 수 있음
2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3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4	세무당국에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5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채불사업자포함)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6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7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등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8	신청기업, 대표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또는 교부 제한 중에 있는 경우 * 관련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기준, 방법 및 절차)
9	의무사항(보고서/성과실적 제출,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거나, 각종 법령 위반(사업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사업, 지역산업육성사업 등에서 제재 중인 기업
10	지원기간 중, 신청지역 이외 지역으로 본사 또는 사업장이 이전한 경우
11	공급기업이 선정기업과 동일 대표자 또는 자회사인 경우

○ (기타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탈락기업에 대해 별도 통지 없음

4 추진절차 및 일정

- 지원기업 선정절차 및 일정(안)

공고·신청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프로그램 지원/수행	⇒	최종평가
공고게시 및 신청서 접수		선정평가 위원회		전자협약		사업수행		결과평가
7.28.(월) ~8.8.(금)		서면평가		별도 안내		~10.31.(금)		별도 안내

※ 추진상황에 따라 방법/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2025년 7월 28일(월) ~ 2025년 8월 8일(금) 18:00
- (신청접수) 2025년 7월 28일(월) ~ 2025년 8월 8일(금) 18:00
- (신청방법) 온라인 방문(해당공고 선택) → 신청서류 제출(업로드)
 - (신청·접수처) <http://www.smtech.go.kr/region/rms>
 - * 이메일 등 타 경로 제출 불가
 - ** 지역특화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RMS) 사용자 매뉴얼 별첨자료 참고
 - (제출서류)

NO.	서류명	NO.	서류명
1	사업신청서, 상세사업계획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3자제공 동의서
3	중복지원금지 약속서	4	참여기업 자료제공 약속서

※ 파일명 : 기업명_서류명(기업명_사업계획서, 기업명_사업자등록증)

6 관련법규

- (운영요령)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25.04.04)
- (관리지침) 지역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7 문의처

- 지원프로그램 관련 문의

소속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기업지원단 원스톱기업지원팀	김남희	051-320-3544	kimnh@btp.or.kr
	김영현	051-320-3549	hoya8241@btp.or.kr
	오수현	051-320-3528	eve123@btp.or.kr

- RMS 관련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및 RMS 소통게시판
별첨 사업신청서류 양식 일체. 끝.